

2010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요강

2010. 7.

2010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개요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 ▷ 자격시험: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해 여성가족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 1회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 시험을 실시함.
- ▷ 자격연수: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해 한국청소년수련원에서 자격검정 합격자 연수를 실시함.

■ 주최 · 주관기관

- ▷ 자격검정 주최기관 : 여성가족부
- ▷ 자격검정 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자격연수 주관기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자격검정 시행 관계기관

- ▷ 제출서류접수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외협력 · 자격검정팀
- ▷ 자격검정시험장 : 광양고등학교 / 오금중학교
(각 급별 시험장 안내는 추후 자격검정 홈페이지(youthworker.nypi.re.kr)/ '시험공고' 란의 일반응시자시험공지 및 필기면제시험 공지 참조)
- ▷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연수[예정]
 -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2급),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1급 · 3급)
 -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연 수 교 류 팀(전화 : 041-620-7793, 7885, 7796)
 -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청소년활동팀(전화 : 033-330-0860, 0864, 0866)

■ 자격검정관련 문의 · 안내

- ▷ 문 의 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외협력 · 자격검정팀 자격검정안내
(☎ 137-715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 ▷ 전 화 : 02-2188-8855
- ▷ 팩 스 : 02-2188-8859
- ▷ 전자우편 : jidosa@nypi.re.kr
- ▷ 홈페이지 : <http://youthworker.nypi.re.kr>

자격검정 응시자 주의 및 확인 사항

◆ 원서작성 및 접수

- 1) 2010년도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검정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접수(현금수납)는 시행하지 않음.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는 등기우편의 경우 서류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 가능. 방문자의 경우 서류접수 마감일 17:00시까지 접수 가능.
- 2) 원본 제출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한 서류가 인정되지 못하여 접수 불가 처리됨
- 3)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검토결과 응시자격 부족 또는 서류 미비자는 접수 불가 처리됨
- 4)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검토 결과는 전화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홈페이지 [원서접수및결과] 란의 서류전형결과에서 확인 가능함

◆ 자격검정 시험 당일

- 1) 필기시험 응시자는 09:00까지 입실 완료하고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함
 - ※ 필기시험 시작(09:30) 이후 입실 금지
 - ※ 필기시험면제대상자의 면접시험 응시 및 고사장 안내에 대해서는 추후 자격검정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각 면접배치 시간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 결시자 처리됨)
 - 2) 각자의 해당 고사장(교실)은 시험 당일 각 학교의 정문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고사장 배치도」에서 확인
 - 3) 시험당일 응시표와 신분증 미지참시 응시 불가
 - 4) 시험일까지 인터넷으로 응시표 재출력이 가능하며, 시험당일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사진(원서와 동일원판) 1매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해당)을 가지고 시험당일 시험장 내 [응시표 재교부처]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5) 고사장(교실)에는 어떠한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휴대전화기, 무선호출기, 전자사전 등)도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함
 - 6) 고사장 내에는 주차할 수 없으니,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차량통제)
- ※ 시험일 약 1주일 전부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홈페이지(youthworker.nypi.re.kr)의 [공지사항]과 [시험공고] 란을 통해 시험당일 유의사항, 각 급별 시험장 및 응시 안내 등을 게시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확인

차 례

I. 일반사항	1
1. 원서접수 및 응시자격심사서류 접수일정	1
2. 시험시행일정	1
3. 시험당일 준비물	1
4. 검정과목 및 검정방법	2
5. 시험시간 편성	2
6. 응시자격요건	3
II. 원서작성 및 접수방법	4
1. 원서작성	4
2. 원서접수(모든 응시자는 인터넷 접수)	4
III. 제출서류	6
1. 검정과목 전공이수 응시자(졸업예정자)	6
2.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 응시자	6
IV. 자격검정 시험안내	9
1. 시험일시 및 장소	9
2. 시험당일 응시자 주의사항	9
3. 학교시설 이용관련 주의사항	9
V.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결정 및 발표	11
1. 합격자 결정	11
2. 합격자 발표	11
3. 합격자 확인	11
VI. 자격검정 합격자 연수 및 자격증 교부	12
1. 자격검정 합격자 연수	12
2.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	12
3. 안내 및 문의처	12
<부록 1> 청소년육성업무 종사분야별 경력인정 비율	13
<부록 2> “청소년이용권장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	14
<부록 3>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환산방식	14
<부록 4>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 과목(응시자격요건 중 2급 1의2, 2의2 및 3급 1의2 관련)	15
<부록 5>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15
<서식 I> 경력증명서	16
<서식 II> 자원봉사활동확인서	17

1. 일반사항

1. 원서접수 및 응시서류접수 일정

응시구분	원서접수 (인터넷)	응시서류제출 (등기우편·방문)	서류전형 결과공지	유의사항
청소년육성업무종사 경력 응시자	2010.8. 9(월) ~ 8.13(금)	2010.8.16(월) ~ 8.20(금)	2010.9.25(토)	•등기우편의 경우, 제출마 감일 소인분까지 접수 •방문제출자의 경우, 제출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검정과목 전공이수 응시자 [졸업(예정)자 대상]	2010.8.30(월) ~ 9. 3(금)	2010.9. 6(월) ~ 9.10(금)	2010.10.2(토)	•서류전형결과공지는 사정 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검정수수료는 현장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인터넷접수를 통해 결제하신 후, 출력한 응시원서와 구비서류 일체를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수수료 결제마감 시한 : 인터넷원서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검정 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응시 불가함

※ 응시취소 신청안내

인터넷접수 마감일 이후 **10일 이내** 자격검정 홈페이지 [원서접수및결과 > 접수확인] 란의 응시취소신청안내를 통해 신청(검정수수료 환불)

2. 시험시행일정

응시구분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청소년육성업무종사 경력 응시자	2010.10.24(일), 09:30-17:00 [필기및면접시험]	광양고등학교 (서울시 광진구)	2010. 11. 19(금)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홈페이지 (http://youthworker.nypi.re.kr)
검정과목 전공이수 응시자 [졸업(예정)자 대상]	2010.10.31(일), 09:30-17:00 [면접시험]	광양고등학교 / 오금중학교 (서울시 송파구)	

※ 응시자는 시험일 1주일 전에 자격검정 홈페이지의 「시험공고 > 일반응시자시험 공지 및 필기면제시험공지」에 게시된 고사장 배치현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험당일 준비물

※ 필기 및 면접시험에 응시표와 신분증을 미지참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3) 컴퓨터용 검정사인펜(컴퓨터용이 아닌 사인펜은 사용 불가/필기시험응시자에 한함)

(4) 면접시험 응시에 필요한 응시표 부착용 옷핀

4. 검정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검정 과 목	검 정 방 법		문제수(객관식/주관식) / 배점(객관식/주관식)
1급 (5과목)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주·객관식 필기시험 (면접 없음)		각20문제(14/6) / 100점(70/30)
2급 (8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객관식 필기 시험	면 접 (3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 시험 면제)	각20문제(20/0) / 100점(100/0)
3급 (7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객관식 필기 시험	면 접	각20문제(20/0) / 100점(100/0)
면접 시험	주요 면접 내용		면접방법	면접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 청소년에 관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 - 창의력과 의지력, 지도력 등 		집단면접 (응시자 3~5명씩 1조로 하여 3인의 면접위원이 채점)	2급, 3급 시험응시자 * 면접 준비물 : 응시표, 응시표부착용 옷핀

-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검정과목 전공이수[졸업(예정)자 대상] 관련으로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면접시험에 응시함
- ※ 검정과목 전공이수와 관련한 전공과목 인정범위는 부록 5(15쪽) 참고

5. 시험시간 편성

(1) 청소년육성업무종사 경력 응시자(시험일 : 2010년 10월 24일/ 필기및면접시험)

구분		1 급	2 급	3 급
필기 시험	시간	9:30~11:10(100분)	9:30~10:50(80분)	9:30~10:50(80분)
	과목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휴식	완료(귀가)	10:50~11:10(20분)	10:50~11:10(20분)
	시간	-	11:10~12:30(80분)	11:10~12:10(60분)
면접 시험	과목	-	청소년활동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복지	청소년활동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휴식	-	휴식 (개별 중식)	
면접시험		-	14:00~17:00 (종료 시간은 면접진행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음)	

(2) 검정과목 전공이수 응시자[졸업(예정)자 대상] (시험일 : 2010년 10월 31일/ 면접시험)

- ※ 시험시간편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험일 1주일 전에 자격검정 홈페이지의 「시험공고 > 필기면제시험공지」에 게시된 ‘면접시험고사장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각 면접배치시간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 결시 처리됨).

6. 응시자격요건

(1) 등급별 응시자격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1】)

구 분	응 시 자 격 기 준
1 급 청소년지도사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급 청소년지도사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1의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2의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자 3.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3 급 청소년지도사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1의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주: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13쪽 <부록 1> 참조)

2.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연수 등 청소년육성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자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14쪽 <부록 3>참조)

4.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라 함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을 말한다.

※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1년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됨

* 2급 1~2호 및 3급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면접시험에 응시함

* 2급 1의2호, 2의2호 및 3급 1의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면접시험 응시 [관련과목은 부록 4(15쪽) 참조]

(2) 자격검정 응시부적격자(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관련근거에 의해 검정과목 전공이수 응시자의 경우, 1992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는 검정과목 전공이수 응시자 대상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2차 교부일(2011.02.28) 기준 미성년자이므로 2010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 불가함

(3) 자격요건 세부사항 안내

【별표 1】 의 응시자격기준 중, '1급, 2급의 3항~6항', '3급의 2~3항'과 관련된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비율(종사분야 및 업무내용에 따라 100%, 50%, 30%로 차등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록 1(13쪽) 및 자격검정 홈페이지(youthworker.nypi.re.kr)의 「자격제도 > 응시안내 > 종사분야별 경력인정 비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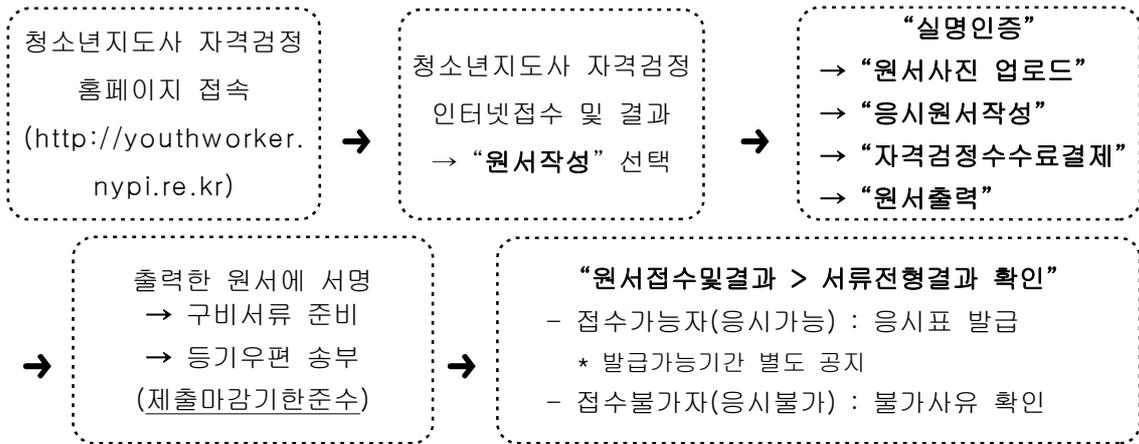
II. 원서작성 및 접수방법

1. 원서작성

- (1) 인터넷 원서 작성시, 원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응시자 참고사항]을 반드시 참조
- (2) 원서 출력 후, 원서 상단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정상 접수됨
- (3) 원서에 업로드 할 본인 사진은 6개월 이내의 반명함판 사진으로 함
- (4) 응시학력에 대한 사항은 **【별표1】**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응시자격기준(3쪽) 참조
- (5) 검정수수료 환불계좌는 응시자격 부적격자의 검정수수료를 환불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본인명의로 된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통장이 없어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환불 받아야할 경우 원서의 계좌번호란에 타인의 계좌번호와 함께 계좌주의 이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6)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 허위 내용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

2. 원서접수(모든 응시자는 인터넷 접수)

(1) 접수순서



※ 인터넷 접수 완료 후 출력한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등 제출서류 일체를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송부하지 않을 경우 자격검정 시험에 접수되지 않음

(2) 인터넷 접수기간 : ※ 해당기간에만 접수가능함.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응시자 : 8월 9일(월)~8월 13일(금)
- 검정과목 전공이수 응시자[졸업(예정)자 대상] : 8월 30일(월)~9월 3일(금)

(3) 응시원서·구비서류 제출기간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응시자 : 8월 16(월)~8월 20일(금)
- 검정과목 전공이수 응시자[졸업(예정)자 대상] : 9월 6일(월)~9월 10일(금)

※ 등기우편 송부의 경우, 제출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

방문제출자의 경우, 제출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4) 검정수수료 : 20,000원 결제(결제 수수료 별도)

(5)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접수처 : (137-715)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우면동 교총빌딩) 8층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외협력자격검정팀 811호

(6) 응시표 발급 방법

서류전형결과 공지(2010년 9월 25일/10월 2일) 이후 응시가능자에 한하여 자격검정홈페이지 [원서접수및결과 > 응시표발급]에서 응시표 발급이 가능함.

단, 응시표 발급 가능 기간은 자격검정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III. 제출서류

[모든 응시자 공통서류]

- 청소년지도사 응시원서(인터넷 접수 완료 후 출력본)
- 수수료 납부확인서(영수증)

1. 검정과목 전공이수 응시자[졸업(예정)자 대상]

- 졸업증명서 원본(졸업예정증명서 원본)
- 성적증명서 원본
 - ※ 과목이수예정자의 경우, 전공과목 이수내역 확인서 원본 제출
(인터넷접수를 통해 원서와 함께 출력한 후 해당 서류에 담당자 확인 및 학교장 직인 수령)
 - ※ 접수시점 이전까지 과목이수를 완료한 자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것
 - ※ 성적증명서에 이수한 과목의 이수구분이 교양, 기초, 자유선택, 일반선택 등으로 명기될 경우 인정 불가

2.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 응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 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
-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2003년 7월 이후에 한함) 및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2006년 이후에 한함)은 청소년 담당 정부부처 지원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 및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에 한하여 인정
단, 자격취득이전에 받은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시간은 차기 자격취득에 필요한 경력으로 환산하지 아니함(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제34조3항)

청소년단체

- 응시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원본
 - ※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소지자로 응시할 경우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 경력증명서 원본(관련 서식은 <서식 I>, 16쪽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 경력증명 발급기관 증빙서류
 -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지부의 경우) 등 사본 중 택1
-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쉼터,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 응시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원본
 - ※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소지자로 응시할 경우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 경력증명서 원본(관련 서식은 <서식 I>, 16쪽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 경력증명 발급기관 증빙서류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서, 위탁계약기간이 명시된 관공서 공문(위탁계약서), 지자체 조례 등 사본 중 택1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청소년육성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 응시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원본
 - ※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소지자로 응시할 경우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 경력증명서 원본(해당부서와 업무내용 명시)
- 청소년육성업무 담당 기간의 업무분장표 또는 공문서(원본대조 및 확인자인 必)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청소년단체담당 지도 교사

- 응시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원본
 - ※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소지자로 응시할 경우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 교사 경력증명서 원본
- 해당 학교장의 단체지도교사 확인서 원본
- 청소년단체에서 발급한 지도교사 확인서 원본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청소년이용시설

- 응시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원본
 - ※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소지자로 응시할 경우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 경력증명서 원본(관련 서식은 <서식 I>, 16쪽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 담당 기간의 업무분장표 또는 공문서 사본(원본대조 및 확인자인 必)
- 경력증명 발급기관 증빙서류 : 시설허가증, 시설신고증, 위탁계약 기간이 명시된 관공서공문(위탁계약서), 지자체 조례 등 사본 중 택 1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아동복지시설

- 응시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원본
 - ※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소지자로 응시할 경우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 경력증명서 원본(관련 서식은 <서식 I>, 16쪽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 담당 기간의 업무분장표 또는 공문서 사본(원본대조 및 확인자인 必)
- 경력증명 발급기관 증빙서류 : 아동복지시설등록증, 위탁계약 기간이 명시된 관공서공문(위탁계약서) 등 사본 중 택 1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교원, 보호관찰관 근무경력

- 응시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원본
 - ※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소지자로 응시할 경우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 경력증명서 원본(해당부서와 업무내용 명시)
- 교원자격증 사본(소년원교원에 한함)
- 청소년육성업무 담당 기간의 업무분장표 또는 공문서(원본대조 및 확인자인 必)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아동 · 청소년관련 법정위원

- 응시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원본
 - ※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소지자로 응시할 경우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 위원 위촉장 사본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자원봉사자

- 응시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원본
 - ※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소지자로 응시할 경우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관련 서식은 <서식 II>, 17쪽 참조)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 응시 급별 및 유형별 자세한 제출서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홈페이지(youthworker.nypi.re.kr)의 「자격제도 > 응시안내 > 제출서류안내」 참고
- ※ 참고사항
 - 부록 1(13쪽) 「청소년육성업무 종사분야별 경력인정 비율」
 - 부록 2(14쪽) 「청소년이용권장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
 - 부록 3(14쪽)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 환산방식」
 - 부록 4(15쪽)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과목(2005.12.31 이전 졸업자)」
 - 부록 5(15쪽)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IV. 자격 검정 시험 안내

1. 시험일시 및 장소

- (1) 청소년육성업무종사 경력 응시자 (필기·면접시험)
2010년 10월 24일(일), 09:30-17:00, 광양고등학교(서울시 광진구)
- (2) 검정과목 전공이수 응시자[졸업(예정)자 대상] (면접시험)
2010년 10월 31일(일), 09:30-17:00, 광양고등학교(서울시 광진구)
오금중학교(서울시 송파구)

2. 시험당일 응시자 주의사항

- (1) 시험 OMR 답안카드 작성은 컴퓨터용 검정 사인펜만 사용.
- (2) 답안카드에 응시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 이중답안 표기 및 낙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3) 답안카드에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음.
- (4)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기, 무선호출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카메라 펜, 라디오, 워크맨 등 통신기기나 전자기기 등은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됨.
- (5)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되지 않으며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함. 만일 문제지를 반납하지 않거나 응시표 등에 문제를 옮겨 적어가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함.
- (6) 시험장에는 차량을 이용하여 입장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바람.

※ 시험일까지 인터넷으로 응시표 재출력이 가능하며, 시험당일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사진(원서와 동일원판) 1매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해당)을 가지고 시험당일 시험장 내 [응시표 재교부처]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음.

3. 학교시설 이용관련 주의사항

- (1) 교내 운동장에는 주차할 수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일에 학교 입구에서 차량을 통제함)
- (2) 교정 내 모든 곳은 절대금연입니다.
- (3) 교내 기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고등학교 약도] : 2010년 10월 24일(일) / 10월 31일(일) 시험고사장



- 위치 : 서울시 광진구 자양2동 674-1
- 교통편 : 지하철 - 2호선 구의역(4번 출구) 하차, 도보 15분
 버스 - 하차 후 도보 5분
 · 잠실대교앞 하차: 간선버스 302, 303, 지선버스 2225번
 · 자양아파트앞 하차: 지선버스 2221, 2223, 2225, 광역버스 9403번

[오금중학교 약도] : 2010년 10월 31일(일) 시험고사장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34번지
- 교통편 : 지하철- 5호선 오금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버스- 송파경찰서, 현대아파트 정류장 하차 - 3215, 3314, 3313, 3315, 3417

V.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결정 및 발표

1. 합격자 결정

(1)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 1) 1급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 2) 2급·3급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2) 필기·면접시험 합격자 사정기준

- 1) 필기시험 :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과목 평균 6할 이상 득점한 자
- 2) 면접시험 : 면접시험위원(3인) 전원의 면접시험평정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 이상을 얻은 자

※ 단, 면접시험위원의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

(3) 재응시 규정

: 필기와 면접시험 응시자 중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다음 1회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함

※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과목 전공이수 응시자인 경우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미졸업 및 검정과목 미이수 등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시험 합격 및 연수 수료가 취소됨

2. 합격자 발표

(1) 일 시 : 2010년 11월 19일(금)

(2) 방 법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홈페이지(<http://youthworker.nypi.re.kr>)

3. 합격자 확인 및 합격통지서 발급

(1) 시험결과 및 점수확인

-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홈페이지 「합격자발표 > 합격자확인」란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 가능
- 2) 시험결과 확인 시 필기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과목별 점수확인 가능

(2) 합격통지서 발급 : 합격자 발표와 함께 ‘합격통지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함.

- 1) 자격검정 홈페이지 「합격자발표 > 합격통지서 발급」란에서 발급
- 2) 합격자 연수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수련원으로 직접 문의

(3) 면접불합격 안내문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에 불합격된 자에 한하여 『면접불합격통지서』를 원서에 기재한 수신처로 송부

VI. 자격검정 합격자 연수 및 자격증 교부

1. 자격검정 합격자 연수

- (1) 주 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2) 장 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2급),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1·3급)
- (3) 대 상 :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전원(2002년 이후 연수 불참자 및 미수료자)
- (4) 일 시 : 2010년 12월 중순 ~ 2011년 1월말 중 3박4일 일정으로 실시 예정
- (5) 연수 참가비 : 일부 본인 부담
- (6) 유의사항
 - 1) 합격자 연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 2) 합격자 연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연수기관으로 직접 문의
 -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연수 교류팀 (전화 : 041-620-7793, 7885, 7796)
 -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청소년활동팀(전화 : 033-330-0860, 0864, 0866)

2.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

◆ 1차 교부

- 교부일자 : 2010년 12월 31일
- 대 상 :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고 합격자 연수를 수료한 자
 - ※ 단, 대학(원) 졸업예정자(검정과목 전공이수 예정자)는 추후 당해 학년도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여부 확인 후 자격증을 교부함
 - ※ 2011년 2월 이전 미졸업자(검정과목 미 전공이수자)의 경우 자격시험 합격 및 연수 수료가 취소됨
- 교부방법 : 본인 및 대리인(위임장지참) 수령 또는 우편교부신청 가능
- 교부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외협력·자격검정팀

◆ 2차 교부

- 교부일자 : 2011년 2월 28일
- 대 상 :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고 합격자 연수를 수료한 자 중 **2010.12.31 기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자
 - ※ 단, 대학(원) 졸업예정자(검정과목 전공이수 예정자)는 추후 당해 학년도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여부 확인 후 자격증을 교부함
 - ※ 2011년 2월 이전 미졸업자(검정과목 미 전공이수자)의 경우 자격시험 합격 및 연수 수료가 취소됨
- 교부방법 : 본인 및 대리인(위임장지참) 수령 또는 우편교부신청 가능
- 교부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외협력·자격검정팀

3. 안내 및 문의처

- (1) 인터넷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홈페이지(<http://youthworker.nypi.re.kr>)
- (2) 전 화 : (대외협력·자격검정팀) 02-2188-8855

<부록 1> 청소년육성업무 종사분야별 경력인정 비율

구분	종 사 분 야	경력 인정비율
제1군	1.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에 근무한 경력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근무한 경력 5.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u>청소년이용권장시설</u> 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에 근무한 경력 7.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등에 근무한 경력 8. 제1호~제7호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경력	근무 경력의 100% 인정
제2군	9.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청소년이용시설 중 공공시설(비영리법인)</u> 에서 청소년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 11. 아동복지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 12.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제2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교원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관 등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13. 제10호~제12호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경력	근무 경력의 50% 인정
제3군	14.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 지도에 관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경력 15. 청소년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위원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력 16.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17.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18.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19. 제14호~제18호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경력	근무 경력의 30% 인정

- ① 위의 표에 명시된 경력에 한하여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고, 경력 환산은 반드시 <부록 3>(14쪽)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환산방식]에 의거하여 산출
- ②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종사경력으로 인정
- ③ 청소년 담당부처 지원의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2003년 7월이후) 및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2006년 이후)을 이수한 자는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
단, 자격취득이전에 받은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시간은 차기 자격취득에 필요한 경력으로 환산하지 아니함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제34조3항)
- ④ 종사분야 제5호(청소년이용권장시설), 제10호(청소년이용시설)은 <부록 2>(14쪽) 참조

<부록 2> “청소년이용권장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

구 분	내 용
청소년이용 권장시설 (경력 100% 인정)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청소년이용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경력 50% 인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2.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6.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7.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8.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高水敷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부록 3>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환산방식

구 분	내 용
종사경력 환산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신의 업무가 청소년육성업무 종사분야에 해당되는지 확인 2) 종사분야에 해당될 경우 : 해당되는 종사분야의 경력인정비율 확인 3) 다음의 도식에 의거하여 자신의 인정 경력을 산출 : 종사경력(최종 인정경력) = 근무기간(개월) × 경력인정비율(1.0/0.5/0.3)
종사경력 환산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시설(종사분야 제1항)에서 36개월 근무 : 36개월 × 1.0 = 36개월 - 청소년이용시설(종사분야 제10항)에서 36개월 근무 : 36개월 × 0.5 = 18개월 - 청소년지도위원(종사분야 제16항)으로 36개월 활동 : 36개월 × 0.3 = 10.8개월
중복경력 처리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기간 내의 중복경력(학력포함)이 있을 경우 하나의 경력(학력)만을 선택해야 함 예시) 청소년단체에 근무하면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 → 청소년단체 근무경력 또는 청소년지도위원 활동경력 중 하나를 선택
지도자 전문연수 경력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시간 20시간당 경력 1개월 인정(단,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2003년 6월 29일 이후 청소년 담당부처 지원에 의한 청소년 지도자 전문연수에 한하여 인정
지도사 직무보수교육 경력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간 20시간당 경력 1개월 인정(단,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2006년부터 청소년담당부처 지원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직무보수교육에 한하여 인정

**<부록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자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별표 1관련)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구 분	영 역	이 수 과 목
2급	필수영역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선택영역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3급	필수영역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선택영역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가 상기 과목으로 이수하여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모두 응시하여야 함

<부록 5>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등급	현행 자격검정 과목	전공과목 인정범위
1급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인권과 복지」 과목 이수자
2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정책론」 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활동」 과목 이수자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문제」 과목 이수자
3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정책론」 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활동」 과목 이수자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문제」 과목 이수자

경력증명서				
인 적 사 항	성명	한 글	인	주민등록번호
		한 자		
	주 소			
	소속 / 부서	예) 청소년수련원 연수팀 (※현재 소속 및 부서명을 기재할 것)		
경 력 (재 직 사 항	근 무	* 근무형태	부서(직책)	담당업무
	예) 2007년 6월 1일~ 2008년 5월 31일 (1년 개월 일)	계약직 (풀타임)	수련팀	청소년축제 운영
	예) 2009년 1월 1일~ 2010년 7월31일 (1년 7개월 일)	정규직 (상근)	연수팀 (팀장)	리더쉽 연수 운영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일)			※ 부서 및 업무변경시 모두 기재할 것
용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제출용			
발 급 처	발급부서		책임자	인
	담당자	인	연락처	
<p>* 근무형태 : 정규직(상근·비상근)/ 계약직(풀타임·파트타임)/ 일용직(풀타임·파트타임)/ 외부업체직원/ 파견/ 기타 중 하나로 표시</p>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경력(재직)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확인기관) ○ ○ ○ ○ ○ 장 인</p>				

※ 위 서식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로 게재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증명서 발급기관 직인과 담당자 확인(도장)이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기재 내용이 과장, 허위로 확인된 경우 향후 해당 단체에서 발급하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제시한 서식과 형태는 다르더라도 구성 내용은 반드시 기재 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번호 :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활동 년월일	활동시간 (총시간)	활동장소(기관)	지도 대상	담당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예) 10년 6월 14일	13:00~18:00 (5시간)	○○청소년수련관	중학생	○○동아리(봉사활동) 지도
10년 6월 21일	16:00~19:00 (3시간)	○○청소년수련관	고등 학생	리더십 프로그램 진행
※ 활동 일별로 작성함.(기간으로 작성시 인정 받지 못함)				
합계				
<p>위 와 같 이 활 동 하 였 음 을 확 인 함 .</p> <p style="text-align: center;">201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확인자 직책 : 성명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발급기관) ○ ○ ○ ○ ○ 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주소: 전화: 팩스: e-mail:</p>				

※ 위 서식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로 게재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상기 확인서는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 경력인정 증명서로서,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모든 기재 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활동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확인서 발급 기관 직인 및 확인자가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기재 내용이 과장, 허위로 확인된 경우 향후 해당 단체에서 발급하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제시한 서식과 형태는 다르더라도 구성 내용은 반드시 기재 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외협력·자격검정팀

주 소 :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우면동 교총빌딩) 8층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외협력자격검정팀 811호

전화(FAX) : 02-2188-8855 (02-2188-8859)

전자우편 : jidosa@nypi.re.kr

홈페이지 : <http://youthworker.nypi.re.kr>